

창원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75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9.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3. 9. 19. 접수 제36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3. 9. 1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3. 9. 19.

접수 제36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C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C이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의 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별지